

보도 일시	브리핑 개시(14:00) 시부터 보도 가능(변동 시 별도 공지)	배포 일시	2022. 8. 11.(목)		
담당 부서	법령제도개선TF	담당자	팀 장	윤원기 (02-2110-4517)	
			검 사	정윤식 (02-2110-451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내일(8. 12.)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 지난 5. 9.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9. 10.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임

[정비 기본방향]

- ▶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함
- ▶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
-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예시적 열거 및 하위법령 위임의 전형적 규정 방식

<‘예시적 열거, 하위법령 위임’의 규정례>

-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범인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조, 제209조) ① 변호인, ②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 ⇨ 가족 + 변호인, 법정대리인 추가

- ※ (’19년 개정 시 대통령령 위임 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범위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 (이번 개정) ‘등’을 ‘중’으로 바꿀지 논의한 후, 본회의에서 ‘등’으로 최종 의결
- ▶ 법문언을 넘어서는 입법취지는 법이론상 있을 수 없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 범죄’ 및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법문언 해석상 명확함

▶ 다만, ‘중요 범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입법 과정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정비

● 먼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를 정의하고 구체적 범죄들을 규정하였음

※ 現 수사개시규정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없이 극히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하였음

●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직접 관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 피해를 초래한 규정을 법 취지에 부합하되 별건수사의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함

※ 現 수사개시규정은 검사 수사 중 진범이 밝혀져도 관련수사를 할 수 없어 불필요한 검·경 간 사건이송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

● 시행규칙은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공무원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

시행령 개정안

제2조(중요 범죄) 「경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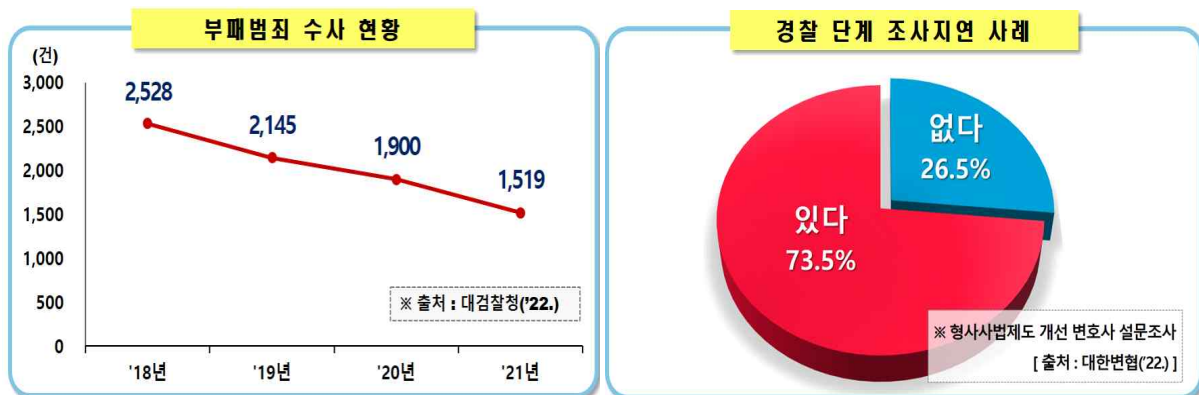
1. 부패범죄: 사무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별표 1에 규정된 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경제 질서를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별표 3에 규정된 죄
 -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1 추진 배경

- 2022. 5. 9.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중요 범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개정 필요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한편, 현행 검찰청법 및 시행령 시행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사건 이송에 따른 절차 지연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 실무상 문제점이 드러남
 -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검사 수사개시 대상인 **중요 범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 초래**
 - 송치사건 관련인지 범위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혐의 발견시 검·경간 ‘사건 핑퐁’이 불가피



-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법개념을 바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정의하고 구체적 대상 범죄를 특정하면서, '18. 6.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명시한 범죄 유형도 참고

- 한편, **OECD WGB**(뇌물방지작업반,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의장(Drago Kos)은 2022. 4. 22.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에 의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고,
 - WGB은 2022. 7. 20. 개정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부패범죄 대응 역량 약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는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려하였음
- ※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무역의 공정경쟁을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97. 12. 마런,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97. 12. 가입)

< 2022. 7. 20. OECD WGB 성명서 주요 내용 발췌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성명서 : 최근의 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역량에 있어 심각한 우려 야기]

OECD WGB는 최근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② 주요 내용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①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재분류(안 제2조 제1호, 제2호)

[부패범죄·경제범죄 정의규정 마련]

- 기존에 다른 법률 등을 통해 정립된 ‘부패’, ‘경제’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 「헌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제질서 및 부패 개념 등을 활용하여 개념 정의

[부패범죄 · 경제범죄 재분류]

○ 개정 「검찰청법」 상 **중요 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 · 선거범죄 등은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부패 · 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중요 범죄에 한하여 부패 · 경제범죄로 재분류함**

-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

※ 예1)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됨 ⇒ 국민권익위 역시 이를 대표적인 구조적부패행위로 명시(홈페이지) / ②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2018. 6.)**’ 에서도 부패범죄로 분류 / ③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 부패방지협약**」도 부패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등 부패범죄임이 명백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018. 6.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구 분	검사 직접수사 영역(‘특수사건’)
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 등 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기업 · 경제비리 등)
금융 · 증권 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 인수합병비리, 파산 · 회생비리 등
선거범죄	▶ 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기 타	▶ 군사기밀보호법(방산비리 관련) /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사법방해 관련)

▶ 「UN 부패방지협약」 제19조(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즉 위법하게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예2) 정치자금법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은 불법적인 이익이 핵심적인 범죄성립 요건이고 부패행위를 수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일부 범죄는 이미 「부패재산물수득특별법」상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UN 부패방지협약」에서도 부패방지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등 선거범죄와 부패범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부패범죄’로 규정

▶ 「UN 부패방지협약」 제2장 예방조치 제7조(공공부문)

2. 각 당사국은 또한 공직 입후보 및 선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선출직인 공직 입후보자의 자금조달과 적용가능한 경우 정당의 자금조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을 검토한다.

예3)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범죄 중 일부)은 방위산업이라는 경제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여타 산업기술·영업기밀 침해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제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범죄’로 규정

-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부패·경제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

※ 이러한 재분류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님

※ 예컨대, 이미 입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부패범죄’에는 뇌물죄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이 포함

[부패·경제범죄 합리적 범위 조정]

- 대표적인 불법 경제범죄인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 범위에서 다시 규정함
 - 경제범죄로서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
 - 마약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범죄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국가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회복이 시급한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음

※ 2021년 개정법 시행 전·후 마약 사건 단속 현황

구 분	적발 인원
2020년(수사권 조정 전)	18,050명
2021년(수사권 조정 후)	16,153명(약 11% ↓)

- 또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며 각종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
 -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는 지역사회에 토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함

※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2(a)는 조직범죄단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의 구조화된 집단”으로 정의

- 나아가, 날이 갈수록 **범죄조직이 지능화·전문화·기업화됨**에 따라, 재개발비리,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등 경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대규모의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중요 범죄에 해당**

※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국제적 조직범죄가 마약 불법 거래, 여성·아동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 장기매매, 금융범죄, 테러리즘 등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

② 중요범죄의 유형 정비(안 제2조 제3호)

-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일정 유형의 범죄를 열거한 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여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함**

▶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조항이 처음 도입된 **2019. 12.경 현행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현행과 같이 “...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위임규정이 마련되었는데, 그 수정이유에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으로 명시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였음을 명확히 실시함

원안	수정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수정안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원문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범위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 이번 개정법의 심사 과정에서,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으나, 본회의 수정안에서 현행법과 동일하게 ‘중’이 ‘등’으로 환원되어 최종 의결됨

원안(법사위)	수정안(본회의)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사법질서 저해범죄’ 규정

- 무고·위증죄와 같이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중요 범죄에 포함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 국가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무너지는 경우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함

※ 무고 수사 공백에 따른 각종 음해성 허위고소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 필요

※ 현행 법령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무고 인지를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원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무고죄의 본질과 상충되고, 대부분의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한계

[2021년 개정법 시행 전·후 무고죄 관련 검·경 인지 통계]

구분	'18	'19	'20	'21
검찰(건)	1145	915	717	220
경찰(건)	112	74	78	126

※ 원 사건의 종국 결정과 함께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무고죄의 성격상 종래 주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왔고, 2021년 개정법 시행 후 검찰 인지가 급감한(497건↓) 반면, 경찰 인지 증가 건수는(48건↑) 그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인 무고 수사에 공백이 초래되었음이 확인됨

- 이는 전체 국가사법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 범죄 유형으로서,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님

※ '18. 6.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검사 수사개시 필요 범죄로 명시하였고, 「UN부패방지협약」에서도 부패범죄로 규정

▶ 2018. 6.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구 분	검사 직접수사 영역('특수사건')
기 타	▶ 군사기밀보호법(방산비리 관련) /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사법방해 관련)

▶ 「UN 부패방지협약」 제25조(사법방해)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허위 증언·감정 또는 증거의 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법관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 이 호의 규정은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법을 행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 규정

- 개별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검사(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중요 범죄에 포함
-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된 개별법의 취지상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로서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개별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 고발을 접수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예) 「5·18민주화운동법」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규정과 달리 고발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선관위 고발사건 등)

③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검찰청법」은 검사 수사 개시 사건이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제한 없이 허용

- 현행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 개념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부작용 발생

-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예를 들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더라도 사건을 분리하여 경찰에 이송하도록 하는 구조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경을 오가며 거듭 조사를 받고, 수사와 재판 절차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사건 지연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인권침해가 심각함

※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어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발견 저해 및 무익한 검·경 수사 반복, 사건 ‘핑퐁’ 불가피 ⇨ 피의자, 피해자, 검·경 모두에게 불합리

※ 시민단체, 변호사 등이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수사지연을 지적하고 있고, 검사의 관련인지 제한이 그 중요 원인으로 작용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

-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제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형사소송법」상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관련수사 허용

-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별건 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여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

○ 「검찰청법」에서 '중요범죄' 중 특정 신분, 특정 금액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현행 시행규칙은 신분, 금액 등 제한을 두고 있음

- (신분 제한)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

- (금액 제한) ①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의료 리베이트,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임원 등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수수금액 5천만원 이상', ②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수수금액 3천만원 이상', ③ 핵물질, 생화학, 첨단제품, 군용물자 등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으로 제한

- 법률의 위임 없이 범죄 유형이 아니라 신분, 금액 등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2중으로 제한하는 현행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위임받은 중요 범죄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시행규칙은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하여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



- ※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큰 액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하게 하면 실제로 큰 액수 범죄는 밝혀지지 않음
- ※ 공무원 부패범죄는, 하위 직급 부패범죄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고위급 범죄가 밝혀지는 형태로 부정부패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려워 결국 조직적, 구조적 부정부패가 암장되는 부작용 발생

▶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수사개시 제한을 둠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단서로 수사 개시하여 상급자까지 연결되는 조직적·구조적 비리를 규명하는 전형적인 반부패 수사 불가능

■ 세무공무원 비리사건

- 각종 세무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6급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기초로, 00국세청 서기관(4급), 前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과장(5급), 前 00 세무서장(4급)의 뇌물수수 범행 등을 밝혀 구속한 사례('18. 6. 의정부지검)

■ 00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

- 00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도청(5급), 시청(6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것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여, 前 00시 건설교통국장(3급) 2명을 구속한 사례('17. 4. 제주지검)

■ 00군수 뇌물수수 사건

- 00군의 지적 재조사 용역비 지급 청탁 명목으로 00군수에게 전달하겠다고 3,000만원을 수수한 00군 공무원(6급)에 대한 수사를 기초로 00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중간 전달자인 공무원 및 00군산림조합장을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입건하여 5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17. 4. 목포지청)

- ▶ 5급 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가 있음에도 중요 범죄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패범죄 대응 공백 발생

■ 00시청 공무원(기능직 8급) 공금횡령 사건

- 공문서를 위조·허위작성 및 행사하고, 첨부서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00시의 공금 80억 7,7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과 그의 처를 각각 구속 기소('12. 11. 순천지청)

■ 아파트 분양권 등을 수수한 00시 공무원(5급) 사건

- 아파트 사업의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취지로 00아파트 4세대 및 상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제공받은 00시 공무원 구속('17. 12. 진주지청)

■ 인허가 관련 업체로부터 역대 뇌물 수수한 00시청 공무원(6급) 사건

-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들로부터 합계 3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구속('16. 11. 경주지청)

- 현재의 신분, 금액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결과로서, 이런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공익이나 국민의 이익이 없으므로,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 부패·경제범죄 영역은 지난 70년간 주로 검찰이 중요수사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가의 부패·경제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었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8. 12. ~ 8. 29.)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정 「검찰청법」 시행(9. 10.)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

※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첨 부】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령안 각 1부 ☐